

문서번호	소방행정과-32401				시 민
결재일자	2022. 8. 8.	담당자	인사팀장	소방행정과장	소방재난본부장
공개여부	부분공개(5)	권진옥	김병춘	代김성곤	08/08
방침번호					최태영

2022년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미 실시 검토 보고



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

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' ■ 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(※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

구 분	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 고
정책의제 형 성	◆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? - 현황자료(통계자료, 빅데이터 등)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	◆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 - (시민참여) 청책토론회, 시민공모, 설문조사 등 - (전문가 자문) 자문위원회 TF운영, 타당성 검토조사, 젠더자문관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정책수립	◆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(근거법령 및 규칙, 지침 등)는 검토하였습니까? - (선거법)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- (성별분리통계) 성별분리통계 생산·제시·분석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	◆ 정책(사업) 집행의 직·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? - (갈등)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- (사회적 약자)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- (일자리) 일자리 창출, 직·간접 채용, 전문인력 양성, 창업지원 - (안전)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, 안전 관리 등 - (온실가스 감축)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,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정책집행	◆ 타기관,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·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? - (타기관) 타기관(중앙정부, 지자체), 민간(단체) 등의 자원 활용 방안 - (자치구 영향)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	◆ 정책·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- (지속가능성) 지역경제 발전, 사회적 형평성, 환경보전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정책홍보	◆ 국내외 정책(사업)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- (홍보) 국내보도자료, 기자설명회, 현장설명회 - (정책영문화) 영문제목요약, 해외언론보도,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- (성평등) 성별고정관념·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기타사항	◆ 불필요한 외국어·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 을 사용하였습니까?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	◆ 공개 여부를 " 비공개 "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 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?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~제8호)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
2022년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미 실시 검토 보고

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재감염 불안감 증대 및 감염으로 인한 출동 소방력 손실 방지를 위해 2022년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을 미 실시 하고자 함

I 관련 근거

-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7조의2(체력검정 실시의 예외)
-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9조(체력검정성적 평정점)
- 소방행정과-2115(22.01.25.)호 「22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기본 계획」
- 소방행정과-31087(22.07.25.)호 「22년 체력검정 실시 여부 의견조회」

II 추진 경과

- 2022년 상반기 체력검정을 위한 체육시설 대관(2021.10.25.)
- 2022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기본 계획수립(22.01.25.)
- 코로나로 인한 상반기 체력검정 연기 의견조회 → 연기 희망자 96.1%
- 2022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하반기 연기 알림(2022.2.21.)
- 2022년도 체력검정을 위한 체육시설 대관(2022.4.15.)
※ 대관 일정 : 2022. 9. 16.~10. 21. / 기간 중 20일(목동운동장)
- 2022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실시 의견 조회(2022.7.27.~7.31.)

Ⅲ 의 견 조 회

의견조회 개요

- 기 간 : 2022. 7. 27.(수) ~ 7. 31.(일)
- 대 상 : 체력검정 대상자(소방정 이하)
- 내 용 : 코로나-19 상황 악화에 따른 하반기 체력검정 실시 여부

의견조회 결과

인 원	(1안) 미 실시	(2안) 하반기 실시	비 고
7,296명	93.39% (6,586명)	6.61% (466명)	

※ 미응답자(244명) : 휴직 206명, 병가·출산 23명, 파견 12명, 기타 3명

Ⅳ 검 토 결 과

코로나-19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

- 체력검정으로 격렬한 집단 신체활동 시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가능성 증가
- 코로나19 재감염 불안감 증대 및 감염으로 인한 출동소방력 손실 우려

직원 의견조회 결과 체력검정 미 실시 희망자 93.39%

- 응답인원 7,296명 중 체력검정 미 실시 희망자 6,586명(93.39%)

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에 따라 체력검정 미 실시 가능

<<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7조의2 >>

체력관리 기관의 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호의 사유로 체력검정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소속 소방공무원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.

※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1호 : 자연재난, 사회재난(화재, 붕괴, **감염병** 등)

검토결과 : 2022년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미실시

평정점 부여 계획 : 2019년도 점수 부여(최근 3년 체력검정 미실시)

○ 『소방공무원 체력관리규칙』 제11조 근거 최근 2년 6월 이내에 체력검정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을 체력검정 점수로 하되, 최근 2년 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가장 최근에 실시한 계급별 평균 점수로 부여

○ 최근 체력검정 계급별 평균점수

계 급	소방령	소방경	소방위	소방장	소방교	소방사	비고
평균점수	4.45	4.53	4.27	4.27	4.32	4.37	

V 향 후 계 획

2022년도 체력검정 미실시 방침 알림('22.8월 중)

2022년도 체력검정 점수부여 방법 안내('22.8월 중).

붙임 관계 법령(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) 1부. 끝.

제7조(체력검정 및 체력단련의 실시) ①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력검정을 매년 4~5월중 실시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7조의2(체력검정 실시의 예외) 체력관리 기관의 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호의 사유로 체력검정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소속 소방공무원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.

※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1호 : 자연재난(태풍, 홍수 등), 사회재난(화재, 붕괴, **감염병** 등)

제11조(체력검정성적의 평정점 부여) ①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점수 기준표(연령대별 보정치 포함)는 별표와 같다.

②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력검정 점수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하여 부여하되, 점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.

1. 체력검정 취득점수 / 14

2. 체력검정 취득점수가 70점을 넘는(연령대 보정치 가산) 경우에는 5점

③ 제7조의2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현 계급에서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부여한다.

1. 제7조의2 및 제9조제2항제2호·제3호·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: **최근 2년 6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을 해당연도 체력검정 점수로 하되, 최근 2년 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검정 점수는 임용권자별 가장 최근에 실시(제7조의2에 따라 일부만 실시한 경우 제외)한 계급별 평균점수(연령대별 보정치수 포함)로 한다.**